

순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9. 4.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순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학평의위원회는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사항에 응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①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성 단체로부터 총장이 추천받아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단체에서 평의원을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총장에게 추천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1.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대표 8명
2.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대표 4명
3.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조교대표 1명
4.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대표 3명

제4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궐 추천으로 위촉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교원, 직원, 조교 : 2년
2. 학생 : 1년

제5조(평의원의 자격상실) ① 교원, 직원 및 조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2.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3. 다른 대학 또는 기관에 90일 이상 파견·출장(연수)

②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90일 이상의 국내외 교류 수학(해외인턴쉽 포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와 임기의 만료, 사임, 퇴직, 보직발령(교원) 등으로 평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공휴일을 제외한다)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장 의장 등

제6조(의장 등) ①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7조(회의) ① 대학평의원회는 총장,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요청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의장은 회의날짜를 정하여 5일 전에 각 평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지와 재심의)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여 결의한 사항을 5일이내에(공휴일을 제외한다)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대학평의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설명과 자료제출) ① 의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부서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시 최소 3일전에(공휴일을 제외한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회의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록을 전부 또는 일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이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③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의의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1조(예산지원 등) ①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행정업무는 교무처 교무과에서 담당한다.

제12조(세부사항)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2019. 4. 1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정 공포 후 최초로 구성하는 교원 평의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당해 년도말까지로 한다.